

의안번호	제 760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박한범 의원 등 6명
발의연월일	2017년 12월 5일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한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60
----------	-----

발의연월일 : 2017년 12월 5일

발의자 : 박한범, 최광욱, 연철흙,
박봉순, 이언구, 임병운

1. 제정이유

-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중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견청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내실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안 제2조~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안 제3조~제5조)
- 의견청취 및 회의록 작성 (안 제6조~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
- 다. 입법예고 : 생략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군 상호간의 분쟁사항 조정
2. 시장·군수 상호간 분쟁사항 조정
3. 시군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조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바이오환경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5명은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과 진행사항
4. 위원과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때

②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촉 해제 사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 한 자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